

공공재정환수법교육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목적

II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III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환수·제재부가금·명단공표
부정청구등신고 및 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목적

2020. 1.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

“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면?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행위를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16323호, 2019.4.16.>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 0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Q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 받나요?



NO

아니요,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므로
2019년에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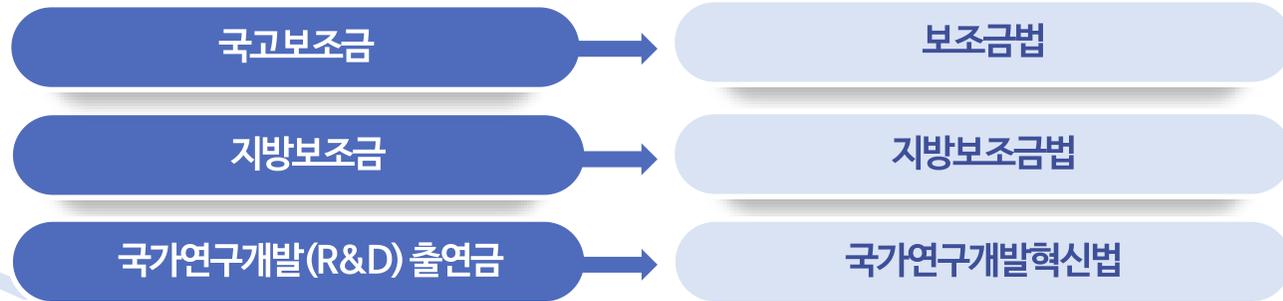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우선 적용



- 01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 02 부정이익등의 환수
- 03 제재부가금 부과
- 04 가산금 및 체납처분
- 05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 06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 07 명단 공표
- 08 부정청구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시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환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공공재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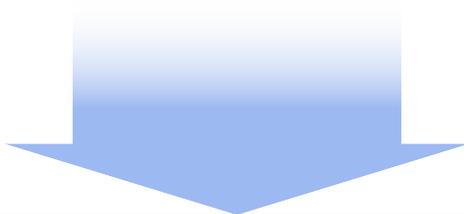


금품등
(법 제2조제3호)

- 금전
- 채권
- 물품
- 상품권, 이용권 등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Q&A 1

Q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서도 공공기관으로 보나요?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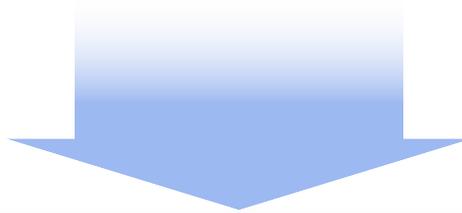
아니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Q&A 2

Q 공기업이 자체 수익으로 조성한 재원도 공공재정인가요?



YES

예, 공기업이 자체수익으로 조성한 재원은 공공재정입니다.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
공기업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공기업이 자체 수익으로 조성한 재원은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 제5호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급여금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 대표사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어린이집 보조금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 이에 따라 증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중앙행정기관 소관

01	310-01	손실보상금
02	310-03	포상금
03	310-04	기타보전금
04	320-01	민간경상보조
05	320-05	이차보전금
06	320-06	구호 및 교정비
07	320-07	민간자본보조
0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01	301	일반보전금
0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03	303-01	포상금
04	306	출연금
05	307-01	의료 및 구료비
0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0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0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1-2	310-01	보상금
02	310-03	포상금등
03	320-01	민간경상보조
04	320-07	이차보전금
0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5-2	320-14	민간자본보조
06	340-01	해외경상이전
07	350	출연금
0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9	620-01	인건비지원
10	620-03	목적사업비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_행정안전부훈령)

고시 개편 전		고시 개편 후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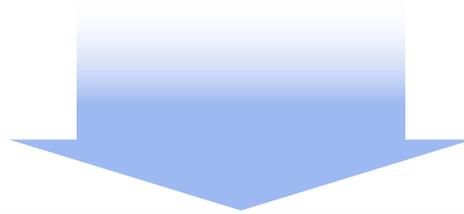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_교육부훈령)

고시 개편 전		고시 개편 후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신설>
320-01	민간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320-14	민간자본보조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삭제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개편('22.5.) :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소관 일부 예산비목

공공재정지급금 Q&A 1

Q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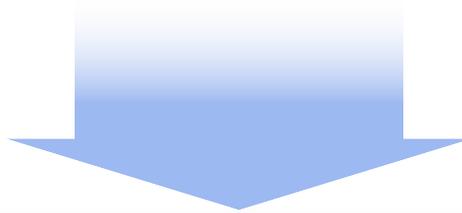
NO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사규)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 Q&A2

Q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NO

아니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 Q&A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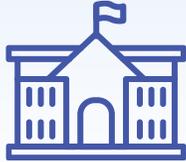
Q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 고시)의 예산 비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YES

네, 법령의 근거 여부 및 성격을 고려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예산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행정청과 부정수익자



행정청 (법 제2조제2호)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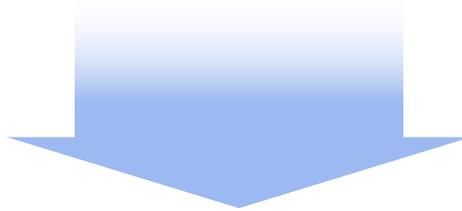


부정수익자 (법 제2조제8호)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국회 등 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공직유관단체는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Q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YES

예,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질 경우 행정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공공기관이 소관부처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예산(사업출연금)을 요구하여 교부 받은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 받은 공공기관도 행정청에 해당**하나요?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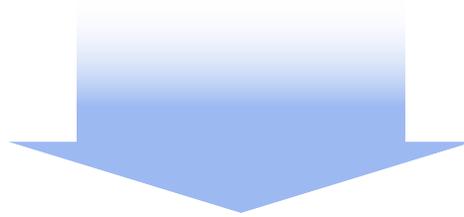
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경우 행정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정수익자 Q&A

Q 국·공립학교도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YES

예,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정의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가 교육청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부정청구등 하였다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부정청구등 유형



부정청구등

법 제2조 제6호

허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등 유형 Q&A

Q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등 유형**에 해당하나요?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처분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환수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x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법의실효성
확보장치

부정이익등의 환수

법 제8조

환수

지급 중단(법 제7조)

확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환수하는 경우 부정이익 + 이자 환수

불확실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환수금액 산정

시행령 제3조

환수금액

부정이익 가액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

목적외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0.1.-'20.2. 연 2.1%
'20.3.-'21.2. 연 1.8%

연 1.2%
'21.3. 현재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수

부정이익등의 환수 Q&A 1

Q 행정청에서 부정이익등 환수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NO

아니요,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은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환수규정은 있으나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정이익등의 환수 Q&A 2

Q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금을 환수할 때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이자를 환수해야 하나요?**

NO

아니요, 「영유아보육법」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에 ‘행정청은 부정이익과 이자를 함께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이익 환수와 이자 환수는 불가분한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이자 환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익등의 환수 Q&A 3

Q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오지급된 피해구제지원금 환수 시
포항지진특별법 및 시행령에 이자 등 부과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이자를 부과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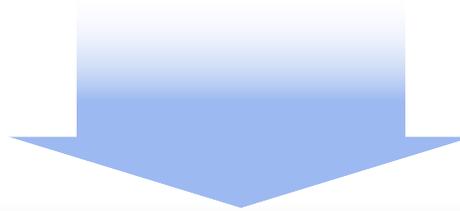
NO

아니요, 개별법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수할 경우 이자 환수도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항지진특별법」 및 시행령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을 경우 이자는 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이익등의 환수 Q&A 4

Q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나요?



YES

예,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우 포인트 배정 자체가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집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자 등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이자 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법 제9조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법 시행령 제5조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x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x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x2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환수금액 산정 예시

사례

A가 '20.2월에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 1,000만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A에게 '21. 9월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등 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A에게 고지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 다른 법률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규정이 없는 경우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20.1.-'20.2. 연2.1% / '20.3.-'21.2. 연1.8% / '21.3. 현재 연1.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10,000,000원



이자
257,500원



제재부가금
20,000,000원



총 납부금액
30,257,500원

이자 계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 (19개월 = '20.2월 ~ '21.8월)

* 이자 = 부정이익 가액 × 계산기간(개월수)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 1/12(연리)

⇒ 1,000만원 × 1개월('20.2월) × 0.021 × 1/12 + 1,000만원 × 12개월('20.3월-'21.2월) × 0.018 × 1/12

+ 1,000만원 × 6개월('21.3월-'21.8월) × 0.012 × 1/12 = 17,500원 + 180,000원 + 60,000원 = 257,500원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2조제6호다목, 영 제3조제2항제3호, 별표1 제재부가금(2,000만원) = 부정이익 가액(1,000만원) × 2배(목적외 사용)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

법 제10조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법 제11조

-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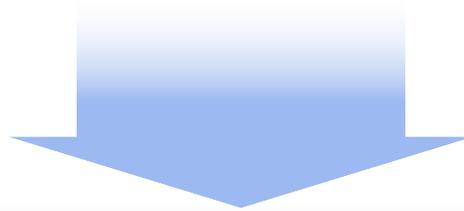
부정청구등으로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Q&A

Q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되나요?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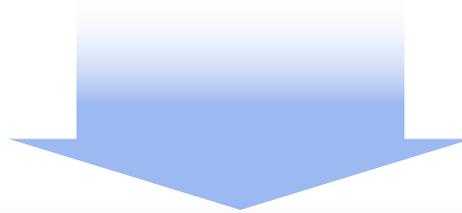
예,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이익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제재부가금의 감면 Q&A

Q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YES

예,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는데 다른 법률에 제재부가금 감면(또는 면제) 및 적용배제 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및 제11조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재부가금 감면, 적용배제 Q&A

Q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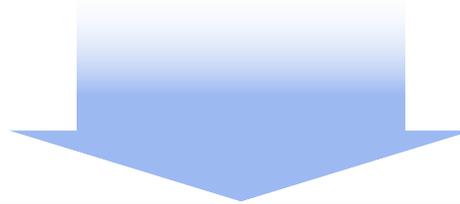
NO

아니요, 다른 법률의 감면규정과 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법권자가 법 집행 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규정한
 개별법의 제재부가금이라는 단일한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의 제재부가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감면, 적용배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Q&A

Q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와 유사한 지원금이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이익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 예외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만 제한적으로 인정, 문언적으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환수 (시행령 제4조)



제재부가금 (시행령 제6조)



참고 서식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관련 예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⑥+⑦)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절차



가산금 예시

사례

행정청이 A씨에게 고지한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10,000,000원)에
'20.9.30.까지 납부기한을 주었는데 체납한 경우 가산금 계산은?

법 제12조, 영 제8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3개월 경과일 부터 60개월 이내 5%



참고 서식

독촉장 관련 예시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p>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등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p>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조사 실시

법 제13조 행정청이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 관련자

-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

조사범위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사무소·
사업장
출입조사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절차 준용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② 부정이익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원장 행정청의 부기관장

- 위원**
- 고위공직자 3명 이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
 -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

소명절차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 5일 이상의 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명단공표

기간

1년간
미납시 계속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내용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참고 서식

명단공표 관련 예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처리기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

결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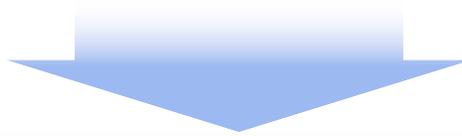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명단 공표 Q&A

Q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등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이익등이 발생한 전 기간에 대한 사항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명단을 2022년 3월에 공표**해야 하나요?



NO

아니요, 법 시행(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합니다.

명단공표의 요건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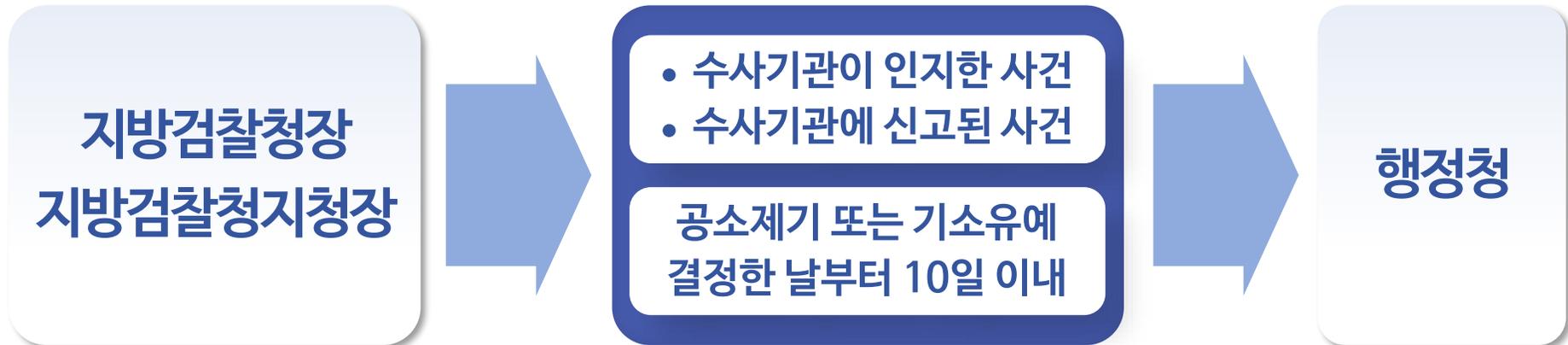
2020년 이후부터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칙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 등의 통보

법 제24조의2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사항 통보 의무화

*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통보



기록·관리

법 제25조 행정청은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관리

참고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대장
예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허위청구	<input type="checkbox"/> 과다청구	<input type="checkbox"/> 목적외사용	<input type="checkbox"/>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 사유 처분 금액 및 납부기한 명단공표 방법 등 기타

기록·관리 Q&A 1

Q 「보조금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환수처분한 경우에도
기록·관리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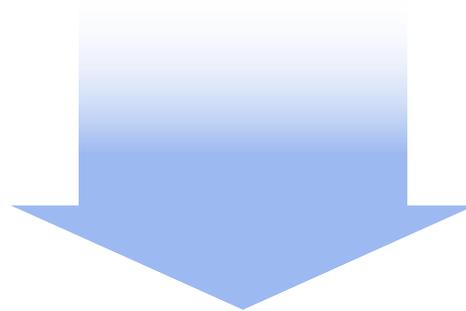
YES

예,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보므로
「보조금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한 경우에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기록·관리 Q&A2

Q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에서 **환수**가 이뤄진 경우에 **기록·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하나요?



처분을 이행한 기관(고지서 발부 등)에서 기록·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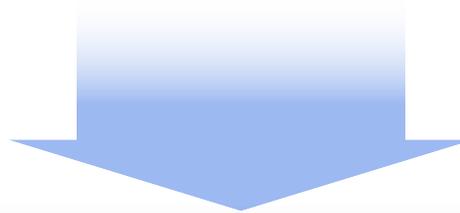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처리 방법·절차 등 준용



* 송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준용
('22.7.5. 시행 예정)

부정청구등 신고 Q&A 1

Q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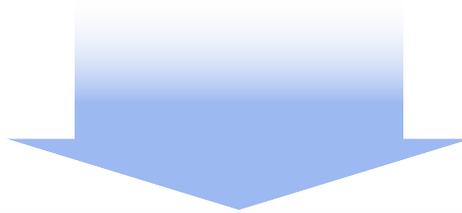
NO

아니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Q&A 2

Q 부정청구등 신고를
공직유관단체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나요?



YES

예, 공직유관단체가 소관 공공기관(행정청)일 경우에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Q&A 3

Q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YES

예, 허위신고 등 조사·감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항의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법 제20조

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법 제19조제1항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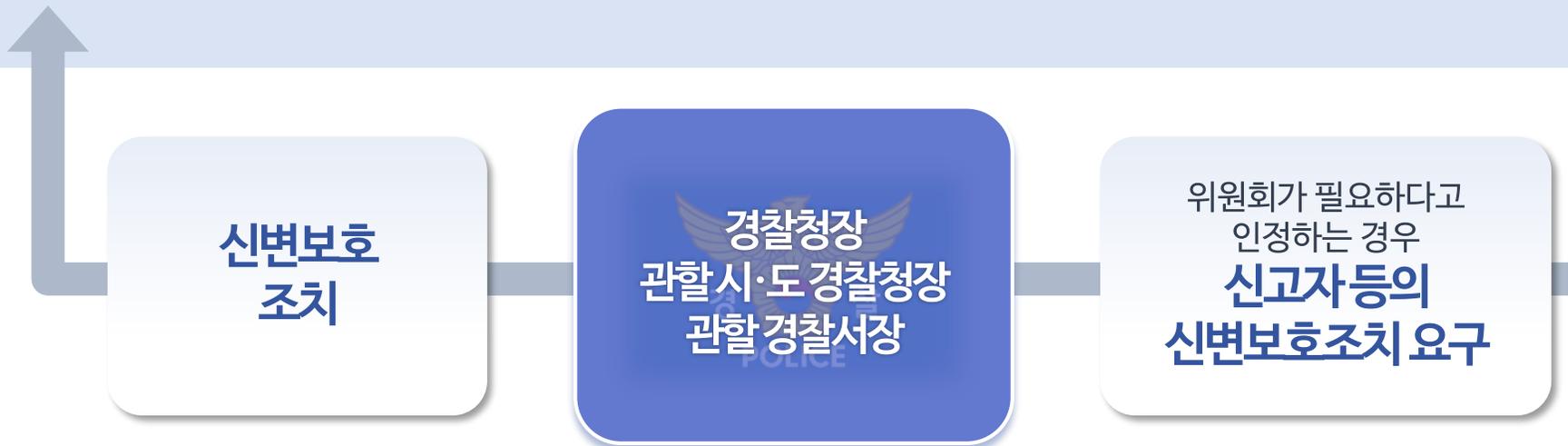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 ☑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인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신고자 보호 (신변보호)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법 제22조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형의 감경·면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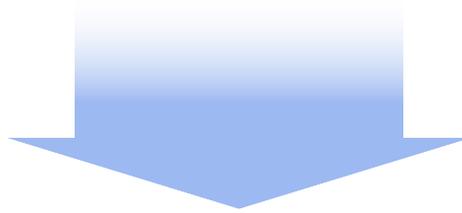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고자 보호 Q&A 1

Q 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NO

**아니요,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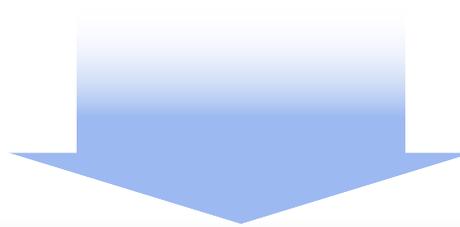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을 알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아 신고내용만으로도 신고자등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호 Q&A2

Q

부정청구등을 신고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알게 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YES

예,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원상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Q&A 3

Q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YES

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포상

법 제23조



보상금 지급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한 경우
[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

신고자 보상·포상

법 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안내사항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신청방법
안내*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신고자
“신청 요건 및 상담”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신고자 보상 상담: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신고자 보상·포상

법 제23조

포상금 지급 추천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지급 대상자 추천



추천요건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가능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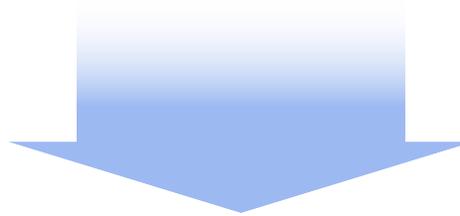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 ③ 그 감독기관
 - ④ 감사원 또는
 - ⑤ 수사기관

※ 신고자 포상 문의 :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신고자 보상 Q&A 1

Q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청구등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환수 또는 제재부가금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또는 구제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Q&A2

Q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에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중 어느 기관에 부정청구등 신고를 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③ 그 감독기관 ④ 감사원 또는 ⑤ 수사기관

신고자 보상 Q&A 3

Q 부정청구등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NO

아니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법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등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행정청이
부과 · 징수

⚠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는 때에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국민권익위가
부과 · 징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국민권익위원회